

#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

1992. 2. 22. 제정

1998. 8. 13. 개정

2001. 4. 27. 개정

2012.12. 10. 개정

2016.10. 12. 개정

## 제1조(사업)

본 편집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는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에서 발행하는 “시설원예·식물공장”의 편집과 간행에 필요한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.

- (1) 투고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
- (2) 논문 심사 결과의 검토
- (3) 학회지 게재 논문의 선정
- (4) 기타 출판물의 간행에 필요한 사항

## 제2조(구성)

본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, 간사 1인, 위원 10인 내외를 둔다. 본 학회 전임이사는 본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.

## 제3조(자격)

소속위원은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으며,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로 한다.

## 제4조(선출)

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,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.

## 제5조(임무)

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며,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.

#### 제6조(임기)

위원장, 간사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위원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. 위원의 임기는 유고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#### 제7조(소집)

학회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8조(의결)

회의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9조(경비)

위원장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.

#### 제10조(권한의 위임)

본 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#### 제11조(학회지 출판)

- (1) 학회지 게재 논문의 심사는 학회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.
- (2) 학회지는 년 4회 발행하며, 매 분기별(1월, 4월, 7월, 10월) 말일까지 출판한다.